



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안내문

제 2022-143호

♣ 교무실 251-5811 ♣ 행정실 251-5809 ♣ FAX 251-5813  <http://www.cjsb.es.kr>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현재 아직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걱정과 염려 속에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. 학교에서는 최선의 일상 방역활동과 학생들의 개인방역수칙 지도를 하고 있으니,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증상 유무를 파악하여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1. 등교 중지 상황별 출결 안내문

유형	등교중지 기간	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(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, 사진 등 포함)
확진자	[등교중지] 격리 해제 시까지 (일반적으로 7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입원·격리 통지서 ·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(소견서)
유증상자	[등교중지]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·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 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*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* 의사의 진단서·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, 의심 증상·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·처방전(치료기간)도 가능
PCR 검사자 (예: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,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,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)	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PCR 음성확인서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

2.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주의사항

유형	등교가능 여부	검사 방식
유증상 학생의 경우	등교 전 검사 실시하여 음성 확인 후 등교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정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권고 ※ 음성결과 인정 기간 - 검사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· 검사 결과 음성이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또는 PCR 검사 권고
동거인 확진의 경우	(검사결과 '음성'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(10일)로 검사 2회 권고 (3일 이내 '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' 1회, 6~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) ※ 정확성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권고,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정용 검사 실시

3.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 시 조치 (접촉자 대상 범위)

접촉자	검사방식	접촉자 외	비고
같은반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 기저질환자	1. 가정이나 병원진료 (신속항원검사) 2. PCR 검사 권고 • 정확성 위해 병원진료(검사)나 PCR 권고	무증상이나 건강 염려 되는 경우 자율적 검사 실시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"학교장 확인서" 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 가능 (학교장확인서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문의) • 유증상이거나 기타 귀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• 격리 해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협조

4. (참고)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

- ▶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: 신속항원검사 불필요
 - ※ 다만,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,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
- ▶ 최초 확진일로부터 45~89일: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을 경우 검사 권고
- ▶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: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

5.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석인정결석 증빙 자료

	접종일	접종 후 1~2일	접종 후 3일~
출결	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(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)		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(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)
증빙자료	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		의사 진단서(소견서), 처방전 등
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. 예)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,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,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,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			

2022. 8. 26.

전주송북초등학교장